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8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

제84조제3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

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집합투자업자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정금전신탁”을 “특정금전신탁(금전을 수탁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103조제1항제3호의 재산을 수탁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
가. 보험계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상법 제730조에 따른 생명보험계약을 말하며 주계약에 부가된 특별약관 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을 것

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신탁의 위탁자와 동일인일 것

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중에서 지정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수익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약의 요건

10의2. 법 제103조제1항제3호의 재산을 수탁함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외의 자를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

나.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신탁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수익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1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103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 ⑤ (생 락) ⑥ 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락)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 <u>조합중앙회</u>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u>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 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 2. (생 락)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 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u><단서 신설></u>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u>

<신 설>

<신 설>

<신 설>

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
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
요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이해
가 상충될 염려가 없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회사를 계
열회사에서 제외한다.

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
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
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
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일
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집합투자업자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4. ~ 6. (생략)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⑤ (생략)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생략)

⑦ (생략)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② (생략)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9. (생략)

<신설>

4. ~ 6. (현행과 같음)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특정금전신탁(금전을 수탁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1.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103조제1항제3호의 재산을 수탁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청
구권을 수탁하는 행위

가. 보험계약자의 사망을 보
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
약(상법 제730조에 따른
생명보험계약을 말하며 주
계약에 부가된 특별약관
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일 것

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
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
계약 대출이 없을 것

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가 신탁의 위탁자와 동일
인일 것

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
속 중에서 지정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수익자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

<신 설>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보험계약의 요건

10의2. 법 제103조제1항제3호의
재산을 수탁함에 있어서 보험
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
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

가.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
계비속, 직계존속 외의 자
를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

나.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
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신탁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수익자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행위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